

# Chubb 지켜줘홈즈주택보험 for 플랫폼파트너 상품요약서

## 1.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

### (1) 가입자격제한

#### ① 판매제한에 관한 사항

이 보험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판매합니다.

#### 가. 계약자

-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전자금융업자 또는
-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, 통신판매업자, 통신판매 중개업자

#### 나. 피보험자

- 상기 계약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회원 중 해당 보험서비스를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방식 또는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신청한 자중 공동주택 (연립(다세대)주택 또는 아파트(주상복합 아파트의 주거용도 부분 포함)로서 각 호(戶), 실(室) 이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)에 거주하는 자

### (2) 상품의 특이사항

- ① 이 상품의 보험기간(보험회사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)은 1년이며,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으로 합니다.
- ①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이므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으며,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.

## 2. 보험금 지급사유,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

### (1)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

구 분	보장명	지급사유	보험가입금액
기본	화재별금	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별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, 피보험자가 형법 제170조(실화) 또는 동법 제171조(업무상실화, 중실화)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되었을 때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함 ** 형법 제170조에 의한 화재별금 : 1,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화재별금 : 2,000만원 한도	2,000만원
기본	주택내 일반가재 도난손해	보험기간 중에 보험목적(일반가재)이 주택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강도 또는 절도로 생긴 도난,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함(자기부담금 : 1사고당 10만원)	1,000만원

구분	보장명	지급사유	보험가입금액
		** 통화, 유가증권, 인지, 우표, 귀금속, 귀중품(점당 300만원 이상), 보옥, 보석, 글, 그림, 골동품, 원고, 설계서, 소프트웨어 등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(보상제외, 약관참조)	
기본	충간소음피해보장	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공동주택인 보험목적에서 “충간소음 <sup>주1)</sup> ”이 발생하여 소음측정결과 <sup>주2)</sup> 가 충간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(최초 1회한)	50만원
기본	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	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내에 있는 6대가전제품에 전기적/기계적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하여 해당 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/S 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자기부담금(2만원)을 공제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함  * 6대가전제품 : TV, 세탁기, 냉장고, 김치냉장고, 에어컨, 전자레인지	100만원

주1) 충간소음 : 공동주택내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준하여 아래층, 위층,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충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충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(충간소음의 범위)를 따름.

주2) 소음측정결과 :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령 3조(충간소음 관리 등)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(측정대행업의 등록)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음·측정대행업체에서 실시한 소음측정결과를 말함.

※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

(2) 지급보험금 산정방식

① 화재별금 :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보험자에게 별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실화의 경우 1사고당 1,500만원 한도, 업무상실화, 중실화의 경우 2,000만원 한도로 실손 보상합니다. 단,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.

② 주택내 일반가재 도난손해

: 손해액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시가로 결정하며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.

(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 공제)

가.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%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: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. 그러나

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.

나.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% 해당액보다 작을 때 :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

$$\text{손해액} \times \frac{\text{보험가입금액}}{\text{보험가액의 80\% 해당액}}$$

다.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

③ 충간소음피해 : 공동주택내에서 충간소음이 발생하고 측정결과 충간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을 지급합니다.

④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

가.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해 자기부담금(2만원)을 공제한후 보험가입금액(100만원)을 한도로 보상하며, 연간 보상하는 보험금 총액은 보험가입금액(100만원)을 한도로 합니다.

나.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1사고당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(100만원) 내에서 수리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, 보험가입금액, 실제수리비 중 최저금액으로 합니다.

다.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

### (3)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

#### ① 화재별금의 경우

-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및 방화
- 계약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및 방화

#### ② 주택내 일반가재 도난손해의 경우

##### 가. 보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물건(보상하지 않음)

- 통화, 유가증권, 인지,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
- 귀금속, 귀중품(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), 보옥, 보석, 글, 그림, 골동품, 조각품 및 이와 비슷한 것
- 원고, 설계서, 도안, 물건의 원본, 모형, 증서, 장부, 금형(쇠틀), 목형(나무틀),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
- 자동차(자동 2륜차 및 자동 3륜차 포함)

##### 나. 보상하지 않는 사유

-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
- 피보험자의 가족, 친족, 고용인, 동거인, 숙박인 또는 감수인(監守人)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
- 전쟁, 폭동, 소요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
- 화재나 지진, 분화, 해일, 폭발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
- 보험의 목적이 건물 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
-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비워 둔 사이에 생긴 도난

#### ③ 층간소음피해

-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, 또는 제3자와의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범 죄행위 또는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
-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
-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친족에 의한 사고
-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또는 측정대행업체에서 소음측정을 하여 기준을 초과한 경우
-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전쟁(선전포고의 유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), 혁명, 내란, 사변, 테러, 폭동, 소요,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상태
-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, 질병 또는 장애, 정신적 쇼크,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애
-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,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

#### ④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

##### 가. 아래의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

-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
- 재판매,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중인 물품
- 골동품, 수집품, 재조립품, 재제작품
-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 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

##### 나. 보상하지 않는 사유

- 계약자, 피보험자(본인, 배우자, 동거친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)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
- 보험효력개시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

- 국내 A/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 
(A/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음)
-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, 잘못된 사용 또는 오·남용으로 인한 손해
- 패임, 착색, 광택저하, 긁힘,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
-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(절단, 튼질, 깎기 등을 포함)
- 도난,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
- 제품 고유의 결함, 설계결함 또는 법적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해
-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
-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
-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, 관리에서 발생한 비용 손해
- 필터, 전구(진공관 포함), 벨트, 잉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 비용
-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유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으로 인한 손해. 단,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유상수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보상함
- 보험목적(가전제품)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
- 전기적/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

### 3. 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 예시

#### (1) 보험료의 구성

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.

#### (2) 보험료 산출 예시

(1년, 일시납)

담보명		보험가입금액
기본계약	화재 별금	2,000만원
	주택내 일반가재 도난손해	1,000만원
	층간소음피해보장	50만원
	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	100만원
보험료		13,430원

### 4.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

#### (1) 해지환급금 산출기준

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.

(2)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

- ①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: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
- ② 그 밖의 해지: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

5. 기타 알아두실 사항

---

Q)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차이점은?

A) 보험가입금액은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. 보험가액은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해액을 말합니다.(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.)

Q)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각각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?

A) 담보별로 보상방식에 차이가 있으며, 일반적으로 정액보상담보의 경우 각각 별도로 보상하며, 실손보상담보의 경우 비례보상합니다.

예) 정액보상담보 : 층간소음피해

실손보상담보 : 화재별금, 일반가재 도난손해, 6대가전 고장수리비용

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